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유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2-34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3월 11일

발 의 자: 윤유선, 신낙형, 김동협, 송순효
김현희, 강선영, 황영호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이 별도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에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2호 대안교육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며, 제3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함(안 제2조)
- 다.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10조)
- 라.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권리 보장 조항을 삭제함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아동청소년과

다. 입법예고: 2022. 3. 11. ~ 3. 16.

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,”를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
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
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
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에 따라 <u>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</u>,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</p> <p>1. “<u>학교 밖 청소년</u>”이란 「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<u>청소년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대안교육</u>”이란 <u>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“<u>청소년</u>”이란 「<u>청소년 기본법</u>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<u>사람</u>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학교 밖 청소년</u>”이란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</u>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의 <u>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</u></p> <p>나.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</p>
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제2호의 “대안교육”을 행하는 기관으로써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.

제10조(대안교육기관 지원)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필요한 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공공시설 이용권)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「초·중등교육

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
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□ 「**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**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체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원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**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**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교육”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시설등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